

대법원 2018도3298

아동학대, 살인미수 등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관실(02-3480-1451)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8. 5. 15. 피해아동(5세)에 대한 아동학대, 살인미수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이○○에 대하여 징역 18년, 피고인 최□□에 대하여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도3298 판결)

1. 사안의 내용

▣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최□□는 피해아동 문◇◇(5세)의 어머니고, 피고인 이○○는 피고인 최□□의 내연남으로서 피고인 최□□가 야간 유흥업소에 일을 나가는 경우 피해아동을 맡아 돌보았음
- 피고인 이○○는 위와 같이 피해아동을 혼자 돌보던 중 2016. 7. 28.부터 2016. 10. 25.까지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뒤통수나 머리를 때려 4차례에 걸쳐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얼음주머니(아이스팩)로 피해아동의 낭심부위를 때려 음낭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아동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당기거나 팔꿈치 관절을 반대로 강하게 젖혀 손목 염좌, 어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음
- 피고인 이○○는 2016. 10. 20. 피해아동이 위와 같이 여러 군데 골절상을 입고, 두개골 골절, 뇌출혈 등으로 치료를 받고 퇴원한 직후인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또다시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눈 부위를 때리고, 손바닥이나 발로 온몸을 때려 피해아동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최□□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의식을

있고 쓰러져 있는 피해아동을 방치해두고 집을 나와 피해아동에게 두개골 골절, 오른쪽 팔 골절 등 다발성 손상, 망막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 결과 안구적출로 실명에 이르게 하여 미수에 그침

- 피고인 최□□는 유흉업소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피고인 이○○로부터 분리하고 직접 보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학대행위를 당하도록 방치함으로써 상습으로 아동복지법상의 방임 행위를 함
- 피고인 최□□는 2016. 10. 20. 피해아동이 피고인 이○○로부터 위와 같이 맞아 실신해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즉시 병원에 후송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고 2016. 10. 28.까지 집에 방치하여 안구 적출로 실명에 이르게 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유기행위)를 하여 중상해를 입게 함

■ 원심의 판단

- 피고인 이○○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상해, 살인미수 모두 유죄
 ▶ 징역 18년
 - 피고인 이○○가 성년과 다르게 작은 체구의 5세 어린아이에 불과한 피해아동의 단 1회만으로도 심각한 신체적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머리에 상해를 가한 점, 피해아동은 이미 폭행으로 두개골이 골절된 적이 있는데도 피고인 이○○는 피해아동에게 안와 골절과 두개골 골절이 발생할 정도로 다시 폭행을 가한 점, 전문가인 의사는 법정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두개골 골절, 안와골절이 사망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해라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피해아동은 사망할 위험성이 있었음. 또한 피고인의 주먹에 의한 피해아동의 머리에 대한 타격방법이나 반복성은 충분히 인정되고, 피해아동의 심각한 상태를 인식했음에도 피해아동을 병원에 데려가지 아니하고 거실의 책장 사이에 방치해 둔 채 범행장소를 이탈하였음 ▶ 피고인 이○○가 피해아동을 폭행할 당시 미필적인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됨
- 피고인 최□□ :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아동학대중상해) 유죄, 아동복

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일부 유죄, 일부 무죄 ➡ 징역 6년

- 피고인 최□□가 실신해 있는 피해아동을 발견하였을 당시 즉시 병원에 가지 않으면 피해아동의 왼쪽 눈에 실명을 포함하여 심각한 손상이 올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피해아동이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안구적출에 의한 실명에 이르지 않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과관계도 인정됨
- 피고인 최□□가 피고인 이○○의 피해아동을 폭행하는 등 학대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아동을 피고인 이○○로부터 분리하고 자신이 직접 보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보호자로서 아동을 상해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지 않은 아동복지법상 방임행위에 해당함. 다만 피고인 최□□가 일부 피고인 이○○에 의한 학대사실을 알았거나 예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방임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음

2. 대법원의 판단

가. 사건의 쟁점

- 피고인 이○○가 2016. 10. 20.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아동을 폭행한 것인지
- 피고인 최□□가 피해아동을 병원에 즉시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것이 피해아동이 안구적출로 실명에 이른 것과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그러한 결과를 피고인 최□□가 예견할 수 있었는지
- 피고인 최□□가 피고인 이○○의 학대행위로부터 피해아동을 분리하고 직접 보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아동복지법상 방임행위에 해당하는지
- 피고인 이○○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운지

나. 판결 결과

-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기각 (원심판결 확정)

다. 판단 근거

- ▣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음
- ▣ 피고인 이○○에 대한 형(징역 18년)이 과중하다고 할 수 없음

3. 판결의 의의

- ▣ 학대행위의 경위나 정도, 위험성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미필적인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고, 보호자가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지 않고 방치하여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아동학대(유기행위)로 인한 중상해죄가 성립하며, 보호자가 아동을 위험이나 상해로부터 보호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아동복지법상 방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임